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3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3월 6일

3. 제안이유

도지사의 임용권중 일부를 기관장이 4급이상인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소속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와 체계적인 인력 관리등을 통하여 조직의 안정과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<기관명>

<위임 내용>

- 지방공무원교육원 :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
- 보건환경연구원 : 지방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속 기관내 전보권
- 충북개발사업소, 도로관리사업소 :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

- 산림환경사업소, : 지방연구사 및 7급이하 일반직,
농축산사업소 기능직공무원의 소속 기관내 전보권

※ 과(課)가 설치되지 않은 여성회관은 제외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도지사의 임용권중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지방공무원교육원장에게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을,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지방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부내 전보권을 위임하였고

충북개발사업소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을, 산림환경사업소장과 농축산사업소장에게 지방연구사 및 7급이하 일반직·기능직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첨 부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